

국 민 안 전 처

시 정 요 구

제 목 ○○ 및 ○○ 소하천 사업추진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함양군

내 용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9조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사설⁷⁸⁾을 점검·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

이에 근거하여 경상남도 함양군 ○○○○과에서는 2016. 1. 4. 경상남도 ○○시 ○○○○로 ○○길 ○○(○○○호, ○○오피스텔)에 소재한 (주)○○○○○○과 도급계약(도급액 1,831,510천원)을 체결하여 “○○소하천 정비사업”을 추진하였고,

2016. 1. 12.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○○○○대로○○○(○○○○ ○층)에 소재한 (주)○○○와 도급계약(도급액 1,847,889천원)을 체결하여 “○○소하천 정비사업”을 추진하였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, 2016. 1. 19. 시행)」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6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·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,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1. ○○ 소하천의 경우

전석쌓기 및 하상보호공 전석 수량산출시 공극률에 해당하는 0.7을 곱하여

78)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·호안·보 및 수문

수량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26,609천원이 과다 계상되었고,

또한, 제외지 홍수위 상단 부분은 세굴 및 침식 우려가 적어 전석 등으로 보강할 필요가 없음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3,113천원이 과다 계상되었다.

2. ○○ 소하천의 경우

○○소하천 일부 제내지(H=0.5~0.8m) 상단 부분은 세굴 및 침식 우려가 적어 전석 등으로 보강할 필요가 없음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17,081천원 과다 계상되었다.

[표] ○○ 및 ○○ 소하천 정비사업 감액 내역 (단위 : 천원)

공종	설계반영 (제경비 제외)		변경(B) (제경비 포함)		감액 (제경비 포함)		감액사유	비고
	수량	금액	수량	금액	수량	금액		
계		124,927		217,877		46,803		
호안공	1,691	99,410	1,691	168,330	726	26,609	전석쌓기 수량 오류	관동
호안공	768	25,517	768	49,547	66	3,113	과다계상	관동
호안공	0	0	0	0	142	17,081	과다계상	미동

조치할 사항 함양군수는

○○·○○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과다 계상된 46,803천원을 감액조치 하시고, 사업추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